

(비공식 번역본)



투자청(BOI) 공고

No. 1/2561

대체투자시장(MAI: Market for Alternative Investment)  
등록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조치

-----

본 발표는 2014년(B.E.2557)12월3일자 투자청(BOI) 공고 No. 2/2557 발표를 말하며, 태국 기업가가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대체투자시장(MAI)에 등록하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투자진흥법 제16조 및 제31조(1977년:B.E.2520) 규정에 의거하여 투자청(BOI)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공고를 발표한다.

1. 제31조 1항에 의거하여 법인세 면제 형태로 투자 지원을 받고, 대체투자시장(MAI)에 등록한 기업은 투자금(토지대금과 운전자금 비용 제외)의 100%를 추가 면제받는 형태로 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.
2. 승인된 지원을 받은 투자사업(investment projects)은 수입을 창출 할 수 있음이 가능하더라도 이 조치에 의거하여 특권 요청이 제출된 시점에서 제31조 1항과 같이 기간 및 금액이 남아 있다면 법인세 면제에 대한 추가 특권을 요청 할 수 있다.
3. 기업은 이 조치 내에서 지원 요청 제출을 하기 전에 대체투자시장(MAI)에 등록해야 한다. 대체투자시장(MAI) 등록한 일자(날짜)는 대체투자시장(MAI)이 회사의 보통주를 대체투자시장(MAI)에 등록된 증권으로 발주한 날을 의미한다.
4. 기업은 2020년(B.E.2563)12월30일 이내에 이 조치에 대한 추가 특권(additional privilege)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5. 본 공고의 발효일 이전에 이미 대체투자시장(MAI)에 등록한 기업은 본 조치의 특권을 받을 수 없다.

이 공고는 2017년 11월 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2018년 1월 31일 공고

제네랄 뿌라웃 찬오차  
(뿌라웃 찬오차)  
투자청(BOI) 의장